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67호 2010. 11. 15. (월)

규 칙	
○ 규칙 제3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2
○ 규칙 제3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4
○ 규칙 제342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10
○ 규칙 제343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16
○ 규칙 제3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23
고 시	
○ 고시 제2010-85호	[하천점용 허가 등 고시].....25
공 고	
○ 공고 제2010-77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26
○ 공고 제2010-781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28

【 안 내 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일립마당 → 북구 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문화홍보과 (☎ 219-7207 행정 720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임신중”을 “임신 중 및 3세 미만 자녀를 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출산 예정 및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공직사회 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당직제」를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6조제3항을 '임신 중 및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자공무원의 일직 근무편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제외한다.'로 조문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인)

2010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341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신설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구(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과오납금의 반환”을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추정가격”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후단 중 “예산배정을”을 “예산재배정의”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경리업무담당의

합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구법」”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송금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송금명령 2종”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경리”를 “계리”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을 “계약담당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22조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의2”를 “영 제89조의2”로 한다.

별지 제87호서식 및 제8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사·용역 관리대장

계약번호	공사(용역)명			계약 업체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공고또는 발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기한	실제준공			
예 산 과 목								
조 직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 통계목				
원도금액				보증구분	보증금액	보증율	보증유 형	보증기관 명
				입찰보증금				
담보기간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변경계약				하자보증금				
				변경일자	변경구분	증 감 액	변 경 도 급 액	
검사 및 입회		검사일자	검수유형	준 공 검 사 자			입 회 자	
도급액 지급내역		지 발의일자	구 분	지 급 금 액			잔 액	

계약방법											입찰내용					
입찰자격 또는사유											현장설명 참가자수					
											입찰등록자수					
설계금액											입찰자수		상시입찰 우편입찰			
예정가격											유효입찰자수					
낙찰금액				낙찰율												
연대보증	상호				대표자					현장 대리인	성명			기술자격 종 류		
지체상금	지체 일수	일			지체상금							납부일자				
선금금 정산내역	정산일자		선금금액			정산금액			정산잔액			비 고				
하도급 현황	통지 및 승인일자		하도급자					하도급 금 액	공종	하도급 비 율						
			상호		대표자											
관급자재 구매현황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별지 제87-1호서식]

물 품 계 약 대 장

번호	계약건명			도급자 주소	예정가격	계약금액	납품기한	수요부서
	계약일	방법	사유	도급자 상호			납품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발의 일자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규칙을 정비, 보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의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지정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과실로 손해시 변상책임 항목 신설(제2조제4항 및 제5항)
- 나. 과오납금 반환 업무 위임전결규정 개정(제4조제1항제3호)
-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중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삭제(제146조제1항제2호)
- 라. 용어 통일 및 조문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42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제29조 후단 중 “제25조 내지 제27조”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제4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 구청장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 7년간
승용 (의전용· 전용)	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 구의회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 7년간
	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 부구청장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 7년간
	소형승용차(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궤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경형승용차(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 8년간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 7년간
	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 년간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경형화물차(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특수용	청소차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 년간
	구급차	○ 단위부서	
	분뇨차	○ 단위부서	
	진료차	○ 단위부서	
	이동수리차	○ 단위부서	
	트럭트렉타	○ 단위부서	
	트레일러	○ 단위부서	
	렉카차	○ 단위부서	
	기타 특수차	○ 구분청 ○ 단위부서	

[별표 2]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경·소형 및 다목적차
구 본 청		16대	1대 (구청장전용)	1대 (부구청장 전용 1대)	14대
보건소	정원 40명 미만	3대			3대
의 회	의회사무과	2대	1대 (의전용)		1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 근 용	<p>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p> <p>나. 의회 : 각종 행사참석 이동용으로 적정대수를 배정</p>
기타 사업용	<p>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p>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본청 등 : 임야면적 2,300ha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동주민센터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을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기 타 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승용차량의 배기량을 자동차관리법과 일치시키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차량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제1조)

나. 경형승용차의 배기량을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소형승용차의 배기량을 “1500cc미만”에서 “1600cc미만”으로
개정(별표 1)

다. 승용차(구본청) 정수기준을 “6대”에서 “14대”로 확대하고, 차형
별 정수에서 “소형 및 싼형승용차”를 “경·소형 및 다목적차”로
변경(별표 2)

라.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중 동 주민센터의 소형화물차량 정수 신설
(별표 2)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인)

2010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343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 예규”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심의의결”을 “심의·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명 이내”를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로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 무수익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다. 구의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출실적·계획

◦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출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구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OCR 센터 운영처리 계획

◦ OCR 센터 운영 및 처리능력 평가후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08년에 폐지된 행정자치부예규 제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로 다시 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제한(제2조제2항제5호 삭제)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별표 2 신설)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완(제4조제3항, 제4항제1호 개정)
 - 위원 구성을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
 - 북구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제12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 제1항제3호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2010. 8. 28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 표준(안)』 시달

2. 주요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및 제2항 개정)

하천점용 허가 등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주)호현 대표 이상윤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41-56번지				
점용위치	대안동 1041-42번지 1041-60번지	하 천 명	대안천		
점용목적	주차장 및 화단조성	점용면적 (㎡)	구 분	계	일시 및 영구
			지방하천	277	277
점용기간	◦일 시 : 2010. 11. 03. ~ 2010. 12. 31. ◦영 구 : 2010. 11. 03. ~ 2014. 12. 31.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0 - 77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과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서 대출권수 확대 및 대출정지 기간을 완화하여 도서관 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중 공공도서관을 구립도서관으로 변경
- 용어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각각 변경
- 회원가입 예외규정에 학교, 직장 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회원가입시 구비하는 신분증 중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대체하고 초등학교 이하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함 (안 제5조)
- 도서 대출권수를 1회 3권이하를 5권이하로 확대하고, 대출정지 기간을 연체건수별로 합산하던 것을 연체기간이 가장 긴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는 1년간 회원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0조)
- 이동도서관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4조)
- 도서관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정한 기준 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7조)
-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 (안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 (안 별지 제1~4호, 제6~7호, 제9호, 제12호, 제1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담당(전화 052) 219-7573, FAX 219-7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전문은 우리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0.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정방법 : 경쟁방법
2. 금 고 수 : 1개 금고
3. 약정기간 : 3년 (2011. 1. 1 ~ 2013. 12. 31)
4. 신청자격
 - 은행법(제2조·제5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중 우리구 관내 영업점 (지점, 출장소)을 둔 금융기관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4%)
 -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9%)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9%)
 - 금고업무 관리 능력 (18%)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별표 1] 평가항목 배점 기준표 : 붙임

6. 신청 절차

가. 관련서류 열람

- 열람기간 : 2010. 11. 18 ~ 11. 22 - 5일간
- 열람장소 : 세무과 (1층 민원실)

나. 신청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11. 23 - 11. 24(2일간)
- 접수장소 : 세무과 (1층 민원실)
- 제출부수 : 12부 (원본 1, 사본 11)
- 제출서류 : 구 금고지정신청서 및 지정신청안내서에 의한 지정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함

7. 심사 방법

- 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의한 심의표 작성
- 서류심사 (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심사 병행)

※ 면접심사에 응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임

- 금고별 평가결과에 따라 1순위를 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정함

8. 금고의 주요 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구 소유 현금과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9. 기타

- 신청서는 우리구 금고지정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